

■ 목 차

■ 지평지성 소식 ■

- 지평지성 호치민시티 사무소, IFLR이 선정한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중 하나로 선정..... 1
- 부산사무소 이전 2
- 공정거래팀 장항석 고문, 진연수 전문위원 영입 3
- 주성훈, 임이지, 홍주원, 최희원, 서주연, 홍우석 변호사 영입 5
- 안상훈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8
- '2012년 법무법인 지평지성 체육대회' 개최 9
- '2012년 제3회 공익강연' 개최 10
- '2012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11

■ 주요 업무 사례 ■

- 라오스 증권법 초안 제정 및 라오스 국회 통과..... 12
- 미얀마 가스복합발전사업 관련 주주간 협약에 따른 자문 및 미얀마 SPC 설립 업무 자문..... 13
- 사법연수원생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 얻게 돼..... 14

■ 법률 논단 ■

- 알박기를 용인하는 주택법제의 문제..... 17

■ 최신 법령 ■

- [상사] 개정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유한책임회사)..... 19
- [자본시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제의 역외 적용 요건 구체화..... 22
- [보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24
- [건설 ·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외 1..... 26

• [공정거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30
• [헌법 · 행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복합개발 촉진.....	31

■ 최신 판례 ■

• [민사]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32
• [도산] 회생절차 개시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35
• [지적재산권] 경찰 내부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허용 여부.....	38
• [노동] 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외 1.....	40
• [제약 · 바이오 · 의료]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의 범위	44
• [헌법 · 행정]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절차.....	47

■ 단신 ■

• 임성택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외 2	50
• 최승수, 정철, 최정규, 배지영 변호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위원 위촉.....	51
• 권순철 변호사, 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중견 해운사인 'TPC코리아'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	52
• 김성수 변호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외 1.....	53
• 배성진, 강경국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3기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 파트 강의.....	54
• 이행규 변호사, CFO 조찬 간담회에서 '국내 SPC를 활용한 해외현지법인 상장 안내' 강연.....	55
• 상해지사 최정식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중국의 해외시장자문회사가 개최한 '중국기업 해외투자포럼'에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관한 주제로 강의.....	56
• 김영수 변호사, '임의비급여 처리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	57
• 류혜정 변호사, 지식경제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최한 '2012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 투자환경 세션의 발제자로 참석.....	58
• 이은영 변호사, PEF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	59
• 임승혁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원정기연수에서 '합병 및 분할 세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	60

■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호치민시티 사무소, IFLR이 선정한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중 하나로 선정

지평지성 호치민시티 사무소가 IFLR이 선정한 Banking and capital markets 분야의 주목할만한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IFLR1000^誌는 런던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지가 발행하는 월간지로서 금융관련 법률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과 국제금융계 인사들로부터 법률실무와 관련해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각 국가별 우수 로펌을 부문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 IFLR 1000^誌의 평가는 전 세계 각국에서 우수 로펌 선택에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현지경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티(Ho Chi Minh City)에 설립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는 본사에서 M&A, 부동산, 금융, 증권 등 전문적 실무경험을 쌓아온 정정태 변호사와 호주계 명문 로펌인 Freehills와 AAR 베트남 사무소에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Projects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한승혁 호주변호사를 중심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지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 개발, 조세, 금융 등의 실무경험이 있고, 영어에도 능통한 베트남 현지 변호사 및 우수한 스탭진을 영입하여 베트남 현지 법률에 대하여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부산사무소 이전

지평지성 부산사무소가 이전하여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주소 : 611-71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법원로 34, 정림빌딩 601호~604호
- 전화번호 : 051-502-2008
- 팩스번호 : 051-502-2340
- 이메일 : busan@jipyong.com

■ 지평지성 소식 ■

공정거래팀 장항석 고문, 진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장항석 고문)

지평지성의 공정거래팀은 2012년 10월 11일 장항석 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장항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보관, 조사국장, 독점국장 및 상임위원을 거치면서 기업결합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 카르텔, 부당지원등 불공정거래사건, 하도급사건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 전문가입니다.

[학력 및 경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과정 졸업
- 제 17 회 행정고시 합격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 경제기획원 과장(서기관)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파견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제도개선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행정담당관(부이사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기획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공보관(이사관)
- 국방대학교 파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연수 전문위원)

지평지성은 2012년 11월 1일 진연수 전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학력 및 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발령(산업통계과)
-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농수산예산과, 보사예산과)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하도급국, 서울사무소, 시장감시국)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전문위원

■ 지평지성 소식 ■

주성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성훈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2년 11월 26일 주성훈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주성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KCL에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대표이사직무정지 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다양한 회사분쟁을 담당하였으며, 증권회사의 IB(Investment Bank)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M&A증개주선과 ABCP, 회사채 발행 등 corporate finance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담당했던 주요 M&A로는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자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자문, SK텔레콤의 (주)필리오 인수자문 등이 있으며, 적대적M&A로서 사조산업의 오양수산 경영권인수, (주)웹젠의 경영권 방어 등이 있습니다. 또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CDS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ABCP)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에는 Hedge Fund의 국내도입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TFT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TFT에도 참여하는 등 M&A분야 및 증권, 금융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이지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이지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2년 9월 17일 임이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임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1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지성 회사파트, 중남미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주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주원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2년 10월 1일 홍주원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홍주원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1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지성 해상팀에 소속되어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사무소 최희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희원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2년 9월 27일 최희원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희원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1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지성 부산 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사무소 서주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주연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2년 9월 27일 서주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서주연 변호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1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지성 부산 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우석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우석 미국변호사](#))

지평지성은 2012년 12월 10일 홍우석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홍우석 미국변호사는 2012년 미국 아리조나와 워싱턴 DC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로스쿨 J.D. 과정 졸업하였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안상훈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안상훈 변호사)

지평지성 안상훈 변호사가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center, Securities & Financial Regulation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2012년 법무법인 지평지성 체육대회' 개최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양평 서종구장에서 전체 변호사 및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숙해 보이지만 놀땐 노는 지평지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경기프로그램과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치며 구성원들 간의 단합을 다졌습니다.

[행사 사진]



'2012년 법무법인 지평지성 체육대회' 개최 (2012. 10. 20)

■ 지평지성 소식 ■

'2012년 제3회 공익강연' 개최

지평지성은 지난 10월 23일 정종익 교수를 모시고 '협동조합'을 주제로 제3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사람중심 비즈니스 '협동조합'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지성 소식 ■

'2012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지평지성 변호사 및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 11월 24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주관의 '201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상계동에서 열린 이번 연탄 나눔 행사에 지평지성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후원 성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에게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지성은 2005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http://www.lovecoal.org/>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2012. 11. 24.)

■ 주요 업무 사례 ■

라오스 증권법 초안 제정 및 라오스 국회 통과

지평지성 금융파트와 라오스팀이 협력하여 한국 법무부가 발주한 라오스 증권법 제정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라오스 정부에서 준비한 증권법 초안을 리뷰하여 라오스 현지 및 서울에서 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자본시장 발전사를 강의하는 등, 라오스 실정에 맞는 증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법무부와 한국거래소 및 지평지성의 자문을 바탕으로 수정된 증권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12월 20일 라오스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Vientiane Times - National Assembly session closes with laws, national issues approved \(2012. 12. 20.\)](#)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미얀마 가스복합발전사업 관련 주주간 협약에 따른 자문 및 미얀마 SPC 설립 업무 자문

지평지성은 탁월한 미얀마 및 국제거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미얀마 발전사업 관련한 주주간 협약에 필요한 제반 법적 자문과 미얀마 SPC 설립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서부발전, 미얀마 가스복합발전 성공적 첫 발(2012. 12. 18.)
- 아주경제 - 서부발전,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발전사업 주주간협약서 체결(2012. 12. 18.)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사법연수원생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 얻게 돼

- 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수행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6 사건) -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사법연수생 821명을 대리하여 수행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86)에서 헌법재판소가 2012년 11월 29일 위와 같이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1년 7월 18일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즉시 임용을 제한하고, 일정 연수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조직법 부칙은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곧바로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판사 즉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모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가지게 된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 즉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40여년 동안 부여된 신뢰이므로 보호가치가 큰 반면,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은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

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만큼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로 즉시 임용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일부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모두 법원조직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사법연수생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2013년 수료 예정인 사법연수생들을 법관으로 임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에 부합하는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 2011헌마786 법원조직법 부칙제1조 등위현확인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판사 되려면 경력 3년” 소급적용 위법(2012. 11. 30.)
- 법률신문 - 현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2012. 11. 30.)
- 연합뉴스 -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 뉴시스 - 현재 “판사임용 3년 경력 필요, 위헌”(2012. 11. 29.)
- 파이낸셜뉴스 - 현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 아시아경제 - 현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 법률저널 - “사법연수원 42기 판사즉시임용불허...위헌”(2012. 11. 29.)
- 아시아투데이 - 현재,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 결정(2012. 11. 29.)
- 뉴스1 - 법 개정전 사법연수원 입소 연수생에 ‘3년 경력’ 요구 ‘위헌’ (2012. 11. 29.)
- SBS 뉴스 - 헌법재판소, 판사지망 사법연수생에 3년경력 요구 ‘위헌’(2012. 11. 29.)

지평지성 뉴스레터

JIPYONG JISU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년 12월 제 43호

[담당 변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구나영 변호사

■ 법률 논단 ■

알박기를 용인하는 주택법제의 문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원 변호사)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에서 큰 장애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알박기는 개발예정지의 땅을 미리 사둔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한 부동산투자에 속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지만 악성의 알박기는 근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알박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시행자가 많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은 알박기가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에 해당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알박기를 시도한 자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도적인 해결 중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가 실효적입니다. 주택법은 사업부지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는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0분의 95 이상 취득한 경우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제도적으로 알박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다. 매도청구소송은 확정되어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항소와 상고를 계속함으로써 판결 확정을 막는다면 1~2년의 세월은 훌쩍 지나가버립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얻을 수 있지만 분양을 하려면 사업부지 소유권을 100%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터무니 없는 고가에 땅을 매수하게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분양승인을 얻는 것까지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는 한 착공을 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법제처 역시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당해 부지는 착공이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법제처 12-0003, 2012. 2. 3.).

결국 알박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수 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사업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에 관해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공을 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을 할 수 있는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요구하고(확정은 필요 없음),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도록 한다면 사업부지 소유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특정 제도가 입법자의 의사대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제도 설계 뿐 아니라 디테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최신 법령 ■

[상사] 개정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유한책임회사)

정철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1. 개정 배경

개정전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던 공동기업의 형태는 회사로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고, 조합으로서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유한책임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 분야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출자자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인적자산의 수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물적회사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사원의 유한책임과 자본조달의 용이성이라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지면서 설립 · 규모 · 운영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합자조합에 이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성립

유한책임회사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3),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 설립에 필요한 최소 사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출자의 목적은 신용이나 노무를 제외한 금전 또는 재산만 가능하고, 설립등기 전에 출자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

3.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분 및 기관

가. 사원 및 지분

개정상법은 유한회사 사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조항을 둘으로써 유한책임회사의 인적회사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후 사원의 가입은 정관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상법 제287조의23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287조의 16) 결국 사원의 가입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원의 퇴사에 관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나, 상법 제2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즉시 퇴사는 준용되지 않아 합명회사의 사원에 비해서는 퇴사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더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 전원은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으로써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7조의 7). 지분양도는 업무집행 사원의 경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사원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이 동의로 가능하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8).

나. 기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 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은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 수행하게 되는데(상법 제287조의12), 이처럼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적회사와 같이 타인기관(제3자기관)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자 또는 공

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

4. 유한책임회사의 이용 가능성

유한책임회사의 이용 가능성을 사원의 유한책임, 조세상 이점, 내적자치(정관자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 사원 전원은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상법 제287조의 7), 이는 유한회사와 동일합니다(상법 제55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은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동업기업과세특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실질이 인적회사에 가까운 유한책임회사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유한책임회사를 과세특례 대상으로 삼고, 유한회사는 현행과 같이 배제된다면 이는 유한책임회사를 이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사원총회 등의 기관의 설치 없이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지 않고 사원의 인적 능력을 고려한 잉여금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 내적자치 측면에서 그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상법」 타법개정(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제의 역외 적용 요건 구체화

이행규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1. 개정 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파생 결합증권을 발행하여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금융투자업자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규제의 필요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자본시장법은 (i)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경영건전성,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감독을 받고, (ii)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iii)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iv) 국내에서 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하거나 투자증개업자가 증개하여 전문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2년 11월 21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요건 중 (ii)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과 관련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 3.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4.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가. 업무의 전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나. 업무의 일부정지 :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최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등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매수한 후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2012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적용 배제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이유경 변호사

2012년 8월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이 2012년 11월 28일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일부 규정 제외)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2012년 8월 30일 자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금융위원회 2012년 11월 28일 자 보도자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참조).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개정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통합상품의 특약형태로 판매 중이고,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은 실손의료보험의 형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규정은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규정 제4-35조의2 제1항 제8호).

나. 자기부담금 다양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추가하여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규정 제7-49조 제5호 가목, 규정 제7-50조 제2항 제1호 가목). 자기부담금을 이와 달리하는 상품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 보험료 변경주기 단축

보험료를 매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 제7-49조 제5호 나목). 또한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규정 제7-51조 제1항 제5호). 다만, 해당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규정 부칙 (2012. 11. 28.) 제1조].

라.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단축

특정연령까지 동일하게 보장하는 현행 방식에서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를 1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가입 조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규정 제7-49조 제5호 다목, 제4-35조의2 제1항 제3호).

2. 다운로드 : 금융위원회 2012년 11월 28일 자 보도자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보험업감독규정(2012년 11월 28일 개정)

■ 최신 법령 ■

[건설 ·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정원 변호사 | 박성철 변호사

1. 개정이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시설을 확대하며,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공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 보완(안 제2조 제3항 제1호 후단 신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확대(안 제27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의과 복지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 용 한옥을 신축하는 등 주택개량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시설 확대(안 별표1 제1호 라목 및 아목)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야영장 및 산림욕장 등을 추가합니다.

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새로운 대지조성 허용(안 별표3 제27호)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의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운로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4178호, 2012. 11. 12. 시행)**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 명확화(안 제3조 제2항 제2호, 안 제20조의3 신설)

- 1)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서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 등에게 공급할 주택을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사업주체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당첨자의 명단관리나 재당첨제한 등의 규정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르며, 다자녀가구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순차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3)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임대의무기간이 50년, 30년 및 20년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서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등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예치금액 변경 시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 단축(안 제5조의5 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치금액의 변경 후 3개월만 지나면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 당첨자 명단 공고 대상 확대(안 제10조 제4항)

사업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명단 공고를 일간신문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간신문 외에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사업주체가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안 제19조 제8항 신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폐지(안 제22조 제8항 제4호 및 제23조 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통보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통보 및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운로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519호, 2012. 9. 25. 시행)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제2012-호, 2012. 10. 16. 시행)

-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향하고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합리화

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 : 부과기준율을 기존 관련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부과 기준금액(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나.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 : 공정위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해당 거짓 · 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자진시정으로 보아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나,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등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의 노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

다. 조사방해에 따른 과징금 가중 규정 상향조정 및 세분화 : 기존의 경우 조사방해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예컨대 i) 폭언 ·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 지연의 경우 40% 이내, ii) 자료의 은닉 · 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 · 변조의 경우 30% 이내, iii) 기타 조사방해의 경우 20% 이내에서 가중

2. 다운로드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제2012-62호, 2012. 10. 16. 시행)

■ 최신 법령 ■

[헌법 · 행정]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복합개발 촉진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1.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유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 · 문화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서, 인천 IHP단지, 춘천 NHN단지, 부산 희동 · 석대단지 등 11곳 112만2,000m²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함으로써, 기타 업무 및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비율을 늘려 복합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3항).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경우,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기존 유상공급면적 의 3% 내)을 폐지하여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제1호).
4. 또한 국외 운영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의 3 제3항 제9호).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도 확대하여,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 에너지설비, 대학시설 등도 입주가능 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제1조의 2).
5. 다운로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190호, 2012. 11. 20. 시행)

■ 최신 판례 ■

[민사]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박영주 변호사 | 성보석 변호사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일반적 성립요건

가. 의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로 하여금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케 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입니다.

나. 일반적 성립요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하고, ②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강제경매를 위하여 압류(가압류)가 있는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지

상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

이와 같이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경락(매각) 당시로 보았습니다.

3. 대상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 · 담보권자 · 채권자 · 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당사자는 그와 같이 하여 정하여지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의 참여, 채무이행, 대위변제 기타의 재산적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하나 또는 그 전부가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경매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제 토지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사용권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존립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중략)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

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상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고, ②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판단하고,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 최신 판례 ■

[도산] 회생절차 개시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배성진 변호사 | 서준희 변호사

1.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런데 2심의 제1회 변론기일 전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2심 법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甲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甲 주식회사의 2심 대리인은 甲 주식회사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었음.

2. 쟁점

-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2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

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 (2)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4.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종전부터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본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라 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과징금 부과 및 액수 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종래 2심의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자 원고가 상고심에서 2심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관리인이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주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본건에서는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2심 대리인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거나 수계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주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본건에서는 주인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2심의 절차상 하자를 상고이유로서 명백히 다루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0. 11. 자 2010마122 결정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경찰 내부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허용 여부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8월경 경북지방경찰청에 “의성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외 1, 2, 3이 ‘누군가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을 타 놓고 땘감을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국 냄비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4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고도 피의자로 의심되는 소외 5 및 그와 친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내사 종결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경찰관들을 고소했습니다. 의성경찰서장은 원고의 고소를 계기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1일 의성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의성경찰서장은 2008년 12월 12일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의성 경찰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

원심(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은 ① 이 사건 경위서에는 관련 경찰관들이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수사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판단에 이른 과정 및 자신들에게

직무상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 공개를 통하여 원고의 알권리를 보호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반복되어 거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대법원

대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의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를 제출받은 사실, ② 피고는 내부 감사 시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해 온 사실, ③ 원고는 2008년 7월 19일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2008년 9월 5일 경북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 최신 판례 ■

[노동] 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김성수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판결 요지

-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 1. 1.이 아니라 2011. 7. 1.로 봄이 상당하다.

노조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 채권자(노동조합)는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사실관계

채권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 지회는 2010. 3.경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011. 3. 31. 경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3. 판결의 의의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

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법 시행일’이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인 2010.

1. 1인지 아니면 개정 노조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는 2011. 7. 1.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법원은 ‘이 법 시행일’이 2011. 7. 1.이라고 판단하였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는 정반대로 ‘이 법 시행일’은 2010. 1. 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1심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9.자 2011카합2077 결정](#)
- 2심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2. 5. 17.자 2011라1502 결정](#)

1심 결정과 2심 결정의 결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이 법 시행일’을 2011. 7. 1.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이라고 보게 되면,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개시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노조법 부칙 제4조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노동]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1. 판결 요지

- 노조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 학습지교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학습지교사들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안정되는 학습지교사들에게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학습지노조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맺은 학습지교사들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학습지노조를 조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동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종래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다만,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조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결국 위 2011구합20239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결론이 배치되는데, 향후 상급심에서 동판결의 결론이 유지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최신 판례 ■

[제약 · 바이오 · 의료]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의 범위

신민 변호사 | 서준희 변호사

1. 사실관계

안과의원 원장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 주식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30만 명에게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과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 원 OK, 응모하신 분 중 단 1 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2회 발송하여 그 응모신청자 중 공소외인 등 20명이 위 이벤트 광고내용대로 90만 원에 라식 · 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음.

2. 쟁점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의 범위

3. 판시사항

(3)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 ·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 ·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의사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내용대로 수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乙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의료광고가 금지되던 1981년경 신설되어 현재까지 그 기본내용이 유지되어 왔는데, 현법재판소가 2005. 10. 27.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함에 따라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의료광고가 어떠한 경우에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게 되는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살피하면서,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서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 최신 판례 ■

[헌법·행정]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절차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1. 판결의 취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을 경우,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큰 경우 잔여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사실관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 중 60%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쳤습니다. 그 후,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함과 동시에 나머지 40% 잔여 토지도 수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한 재결절차가 있었고,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는 시기의 제한이 없고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잔여지에 대한 수용재결절

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증액소송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잔여지 가격이 감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위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 후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며(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 수용과 달리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결을 거친 후 보상을 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공익사업법 상 잔여지 수용청구 절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재결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잔여지 가격감소 유무, 손실의 범위에 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결을 거치지 않은 보상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경우 재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결신청권은 사업시행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결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재결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1. 7. 4. 선고 2011두2309 판결).

대상판결의 근본 취지는 수긍할 수 있지만,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은 소유권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가치하락을 인정할 수 없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결신청을 거부할 경우, 토지소

유자는 직접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별도의 거부처 분취소송을 거친 후에야 재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복잡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법 후속조치 이행 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10월 22일 중앙지방법원 제1심 재판 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제1심 재판의 개선 및 충실회를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성택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 연수원에서 '건설법령의 리스크 유형'이라는 주제로 강의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 연수원에서 '건설법령의 리스크 유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최승수, 정철, 최정규, 배지영 변호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위원 위촉



최승수 변호사



정철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2차 총회에서 최승수, 최정규, 배지영(이하 지식재산권), 정철(국제투자) 변호사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권순철 변호사, 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중견 해운사인 'TPC코리아'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순철 변호사)

지평지성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11월 1일 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중견 해운
사인 'TPC코리아'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진행중인 해운사를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8일과 11월 26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들 3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강의는 소방관들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1주일 과정의 소방법령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종무식에 참석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2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종무식에 참석했습니다.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는 지난 2년간 매월 정기모임을 통하여 전자소송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토론 및 발표회, 법원 및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활동결과를 서울변호사회에서 운영결과보고서로 발행했습니다.

■ 단신 ■

배성진, 강경국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3기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 파트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배성진 변호사 · 강경국 변호사)

지평지성 배성진, 강경국 변호사는 지난 9월 17일 사법연수원 제43기 '특수불법행위법' 강좌에서 제조물책임파트를 맡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성진, 강경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위 강의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 단신 ■

이행규 변호사, CFO 조찬 간담회에서 '국내 SPC를 활용한 해외현지법인 상장 안내' 강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11월 12일 한국거래소 주관 해외현지법인 상장 관련 CFO 조찬 간담회에서 '국내 SPC를 활용한 해외현지법인 상장 안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상해지사 최정식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중국의 해외시장자문회사가 개최한 '중국기업 해외투자포럼'에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관한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지평지성 최정식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는 지난 11월 21일 중국의 해외시장자문회사가 중국 상하이시에서 개최한 '중국기업 해외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40여개의 기업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 단신 ■

김영수 변호사, '임의비급여 처리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영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11월 29일 삼성화재 사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임의비급여 처리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배성진 변호사님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류혜정 변호사, 지식경제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최한 '2012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투자환경 세션의 발제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는 지난 12월 5일 해외자원개발의 미래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지식경제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최한 '2012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원개발투자환경 세션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우크라이나/루마니아 자원개발법제 연구'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도 국내외 자원개발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가스, 광물자원, 자원개발투자환경 3개 세션에 걸쳐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단신 ■

이은영 변호사, PEF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영 변호사)

지평지성 이은영 변호사는 지난 11월 30일 금융감독원 주최 8대 로펌 업무 담당자 초청 PEF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임승혁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원정기연수에서 '합병 및 분할 세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승혁 회계사)

지평지성 임승혁 회계사는 지난 11월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원정기연수에서 '합병 및 분할 세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